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쟁점과 과제

- 디지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성범죄 -

디지털포용본부 AI윤리팀

이형주 주임연구원(hj.lee@nia.or.kr)

「Digital Inclusion Report」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가 가져온 디지털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모든 국민이 소외·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획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 행 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발 행 인 : 문 용 식
- 기획·자문 : 디지털포용본부 금봉수 본부장, 주윤경 팀장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www.nia.or.kr

CONTENTS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쟁점과 과제
-디지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성범죄-

I.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영향력	01
II.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03
1.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03
2. 디지털 혐오표현	08
3. 디지털 성범죄	12
III. 대응과제	16

요약

□ 코로나19와 디지털 이용 형태·소비의 변화

-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일과 학습, 쇼핑, 문화·여가 생활 등 행동양식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위주로 변화
- 특히 인터넷 매체 중 SNS, 인스턴트메신저,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1인 미디어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주요 방식으로 확산

※ 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 : '19년 4.51시간 → '21년 6.32시간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개인화의 힘(Power)

- 1인 미디어 및 크리에이터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사회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에도 기여

※ (경제적 영향력) 상위 10% 내 크리에이터 연평균 수입은 2.16억원(2020, 국세청)에 달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의 창구, 경단녀·미취업자·은퇴자 등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

※ (사회적 영향력) 유명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가 코로나19, 수해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

- 한편, 최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디지털 허위정보 경험률	디지털 혐오표현 경험률	디지털 성범죄 목격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청소년 64.7% </div> <div style="width: 64.7%; height: 15px; background-color: #555; margin-top: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청소년 20.8% </div> <div style="width: 20.8%; height: 15px; background-color: #555; margin-top: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청소년 9.3% </div> <div style="width: 9.3%; height: 15px; background-color: #555; margin-top: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성인 54.0% </div> <div style="width: 54.0%; height: 15px; background-color: #555; margin-top: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성인 12.0% </div> <div style="width: 12.0%; height: 15px; background-color: #555; margin-top: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성인 14.9% </div> <div style="width: 14.9%; height: 15px; background-color: #555; margin-top: 5px;"></div>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NIA,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22

□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별 사례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
아일랜드 대학생이 정보확산 실험을 위해 유명 작곡가 사망 직후 위키 피디아에 허위명언을 작성하였는데 삭제 후에도 사실처럼 확산(NBC)	유튜브상 '사이버 렉카'를 중심으로 허위정보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산, 공격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SBS)	'20년 7월까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여성이 텔레그램에서 인물 이미지를 자동으로 나체에 합성하는 '딤페이크 봇'에 피해(Sensity)

□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개념과 대응현황

구분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Disinformation)	개념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디지털을 수단으로 생산·확산되는 왜곡된 정보
	대응	•(국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존 관련 법률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조치하고 피해지원(상담·법률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 •(해외) 독일(네트워크집행법), 프랑스(정보조작투쟁법), 싱가포르(허위조작정보법) 등 법제도 마련과 민간 자율규제 및 정보판별 교육 등 선제적 조치 실시
디지털 혐오표현 (Hate Speech)	개념	•디지털 수단을 통해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차별·폭력적인 내용을 담아 공격하거나 혹은 이를 선동하는 표현
	대응	•(국내)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현행 법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기술적 조치를 병행 •(해외) 법적 조치 이외에도 민간 사업자, EU를 중심(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한 EU 행동 강령)으로 한 자율규제 확대, 예방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Sexual Crime)	개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
	대응	•(국내)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 피해지원이 병행 •(해외) 형사처벌·피해자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 디지털 역기능 이슈 대응과제

- 정부 주도의 정책에 한계, 민관협력 기반의 해결 노력 확대 필요
 - 진화하는 디지털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바람직
- 역기능 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
 - 기술로 발생하는 역기능 해결을 위해 딥페이크 진위 탐지기술, 데이터 기반 자동필터링 기술 등 역기능 대응 기술의 개발·활용 확대
- 범국가 차원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의 필요성
 - 디지털 활용 교육과 함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국민 스스로가 역기능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별 예방교육 확대 필요
-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일 전담 대응 체계 필요
 -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할하고, 민관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담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예: 호주 디지털안전위원회)

I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영향력

□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

- 코로나19 장기화는 일상의 비대면화를 촉진하였으며, 디지털이 우리의 삶 대부분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창출과 큰 변화의 계기를 주도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국민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가깝게 체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분야별 디지털 대전환 사례〉

분야	관련 기술	내용
문화	인공지능 딥페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과 비슷한 외형과 목소리를 가진 가상인간이 등장하여 광고·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 • 딥페이크를 이용해 대역으로 촬영한 장면엔 주연배우의 얼굴을 합성하여 위험한 장면 촬영에 활용
금융	블록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서 거래중개인 없이 계약을 체결·이행·관리하는 스마트계약 서비스의 등장 • NFT(대체불가능한토큰)의 등장으로 예술작품,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자산의 진위 판단 및 소유권 보유가 가능
일상	클라우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업·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비대면 위주의 학업과 업무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및 협업툴(영상회의 등) 활용이 확산 • 마스크 및 요소수 대란 당시 정부는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민간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 최소화

□ 디지털 이용 형태 및 소비의 변화

-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일과 학습, 쇼핑, 문화·여가 생활 등 행동양식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위주로 변화
 - '21년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93.0%로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이전 대비 인터넷 이용시간도 증가
 - ※ 인터넷 이용시간 : '19년 17.4시간 → '20년 20.1시간 → '21년 20.7시간
- 특히 인터넷 매체 중 SNS, 인스턴트메신저,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1인 미디어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주요 방식으로 확산
 - ※ 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 : '19년 4.51시간 → '21년 6.32시간

〈1인 미디어 이용률 추이 (단위:%)〉

구분	2019	2020	2021
SNS	63.8	65.9	68.9
인스턴트메신저	96.6	97.1	98.3
동영상서비스	81.2	92.7	93.7

* 자료 : 과기정통부·NIA,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2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개인화의 힘(Power)

○ 코로나19로 미디어 수요가 크게 증가해 미디어 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TV 등)과 개인이 미디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 확대

- 1인 미디어 및 크리에이터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사회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에도 기여

※ (경제적 영향력) 상위 10% 내 크리에이터 연평균 수입은 2.16억원(2020, 국세청)에 달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의 창구, 경단녀·미취업자·은퇴자 등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

※ (사회적 영향력) 유명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가 코로나19, 수해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

□ 디지털 미디어 속 디지털 역기능의 심화

○ 미디어의 영향력과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면서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이 다양화·심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피해의 폭과 범위 또한 확대

- 특정 집단 및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역기능에서 1인 미디어의 파급력으로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역기능 발생 패턴이 변화

* (신기술과 결합되는 역기능) 과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순 불법촬영물의 유포 위주였으나,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지인능욕 음란물을 생산하고 개인 미디어로 확산하는 역기능으로 심화

* (확대 재생산되는 역기능) 기존의 악성댓글은 신고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허위사실이 1인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 되면서 점차 사실처럼 확산

○ 최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허위조작정보) 조작 판치는 네이버 리뷰...자영업자 울리는 '허위 별점'(MBC, 21.3.17.)
- (혐오표현) 혐오 댓글에 숨진 000·BJOO.. '사이버 렉카' '사이버 불링' 끊어낼 방법은?(YTN, 22.2.14.)
- (성범죄) "내 친구로 합성해줘"...일상의 n번방 '지인 능욕'(KBS, 20.4.3.)

디지털 허위정보 경험률	디지털 혐오표현 경험률	디지털 성범죄 목격률
<p>청소년 64.7%</p> <p>성인 54.0%</p>	<p>청소년 20.8%</p> <p>성인 12.0%</p>	<p>청소년 9.3%</p> <p>성인 14.9%</p>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NIA,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22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본 후 쟁점과 과제를 도출

II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1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 디지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

- 국내외 언론 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를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의미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로 대체·확산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국내외 주요기관의 정의를 종합하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디지털을 수단으로 생산·확산되는 왜곡된 정보”를 의미

〈국내외 주요기관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기관 명	내용
유네스코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조정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나쁜 의도 유무에 따라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구분 *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조작이나 나쁜 의도 없이 생산·배포되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
유럽연합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익 또는 고의로 대중을 속이기 위해 생산·제시·유포되는 검증 가능한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영국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Fifth Report of Session 201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중을 기만하고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
법무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 *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사의 기사, 패러디, 풍자, 정치적 견해 등은 제외

* 자료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8 / European Union, 2022 / UK Parliament, 2018 / 법무부, 2018 / 방송통신위원회, 2020

□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

- 세계 46개국 평균 58%의 뉴스 이용자가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를 우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우려 비율이 65%로 46개국 중 11위로 나타남
 - 해외 뉴스 이용자는 허위정보 확산 경로로 페이스북(28%)을 가장 우려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34%)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자료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 2021
- 한편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유튜브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98.1%)하며,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이 중요(97.7%)하다고 응답
 - *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이용자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

□ 국내 대응 현황

◇ 우리나라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존 관련 법률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조치하고 피해자 지원이 활성화되는 추세

- (정부규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일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 일부 허위조작정보 유형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예시〉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형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출처 : 법무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2018

- (피해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별점 테러', '악성리뷰' 등 허위조작정보 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법률자문 등 제공
- (자율규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허위정보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심의·삭제 등 조치
-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는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소싱 기반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며 일반 국민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 (예방교육)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팩트체크 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교육 추진

KISO 종합신고센터 (report.kiso.or.kr)	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실 혹은 거짓)	시청자미디어재단 (체크톡)
			

□ 해외 대응 현황

◇ 해외 주요국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여 법제도 마련과 민간 참여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보판별 교육 등의 선제적 조치 실시

○ (정부규제) 일부 국가의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가 활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주요국 법제 현황〉

시기	내용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상의 불법 내용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네트워크 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조작정보 뿐만 아니라 범죄모의, 테러·폭력 선동, 혐오선동 등 독일형법에 해당하는 불법 내용물 대상 - ‘명백한’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에 삭제·차단하고, 그 외 불법 내용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
프랑스 (정보조작투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거기간 중 허위정보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정보조작과의 투쟁에 관한 법률」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간 동안 선거후보자는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허위정보로 판단된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 - 온라인사업자에게 허위정보에 플래그를 표시하여 경고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 허위정보 삭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징역 및 벌금형
싱가포르 (허위조작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허위 게시물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 방지법」을 ‘19년에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허위 게시물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의 정정 또는 삭제를 명령 - 허위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징역 및 벌금형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2019 재구성

○ (자율규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민간과 연계하여 추진

- (민간) 유튜브, 트위터,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차단 시스템(신고·차단 기능)을 운영

※ (페이스북) 언론사와 협업한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통해 팩트체킹(Fact-Checking) 시스템을 운영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책	페이스북의 팩트체킹 시스템
<p>Misinformation policies</p> <p>Certain types of misleading or deceptive content with serious risk of egregious harm are not allowed on YouTube. This includes certain types of misinformation that can cause real-world harm, like promoting harmful remedies or treatments, certain types of technically manipulated content, or content interfering with democratic processes.</p> <p>If you find content that violates this policy, report it. Instructions for reporting violations of our Community Guidelines are available here. If you've found multiple videos or comments that you would like to report, you can report the channel.</p> <p>What these policies mean for you</p> <p>If you're posting content</p> <p>Don't post content on YouTube if it fits any of the descriptions belo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moting dangerous remedies or cures: Content that claims that harmful substances or treatments can have health benefits. • Suppression of census participation: Content aiming to mislead census participants about the time, place, means, or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e census, or false claims that could materially discourage census participation. • Manipulated content: Content that has been technically manipulated or doctored in a way that misleads users. (Removed from video feed and may result in a serious risk of suspension.) 	

* 출처 : Youtube(support.google.com/youtube), Facebook(facebook.com/journalismproject)

- (유럽연합) '18년 4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대응원칙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럽연합 대응 현황〉

시기	내용
'18.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관한 정책안: 유럽의 접근법」 발표 - 투명성 증대, 정보 다양성 촉진, 정보 신뢰도 조성, 포괄적 해결안 마련의 4가지 원칙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제시
'1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 발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율규제 방안 마련 - 5가지 주제 영역과 15개의 준칙으로 구성
'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조작정보 대응 행동계획」 발표 - '19.5월 유럽 의회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목표 - EU기구, 회원국, 시민사회, 민간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 강조
'19.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조작정보 대응 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 '18.12월의 행동계획에 대한 평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강조

* 자료 : 김민정,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2020 재구성

- (예방교육)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정보판별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

〈주요국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판별 교육 현황〉

국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정부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독립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 (일리노이주) '21년 모든 공립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그 내용에 정보접근*에 관한 주제를 제시 * 복수의 미디어 플랫폼을 평가하여 상황 및 정보 출처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 - (워싱턴주) 교육청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할 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내용을 개발하도록 규정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리터러시협회(AML), 미디어스마트(MediaSmarts)와 같은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교재 등 제공 - (AML)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3요소(내용, 생산, 수용자)’를 제시하고, 미디어·이슈별(SNS, 가짜뉴스, 편향성 등)로 해당하는 질문을 제시 - (MediaSmarts) 출처와 정보평가 등의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제공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MOE),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등 국가기관과 시민사회가 국민 생애주기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담당 - (MOE) 2020년부터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National Digital Literacy Program)을 학년별 교육과정에 반영 - (IMDA) 리터러시 전담기관으로 미디어리터러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업계,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하여 사이버괴롭힘·가짜뉴스 등 역기능 및 대상별 교육콘텐츠 제공

* 자료 : NIA,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 2021 / 국회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2021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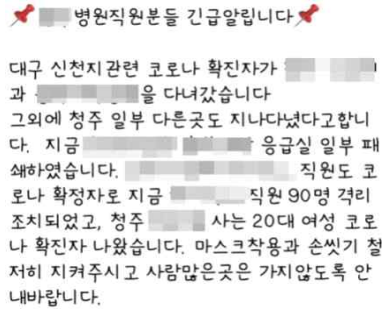
참고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국내외 사례

- (국내) 코로나19가 범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증상, 대처방법, 방역상황, 백신접종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가 다수 생산 및 유통되어 방역 대응 등에 혼란을 유발
 - 질병관리청이 1년간('21.2.~'22.2.)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총 3,120건의 심의 및 삭제를 요청
 - 이 중 허위조작정보로 판정되어 삭제 조치 된 사례는 2,654건(85%)에 달함

* 자료 : 경향신문, 코로나 확산에 가짜뉴스도 범람, 2022.2.9.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 (해외) 아일랜드의 한 대학생이 정보가 얼마나 빨리 전 세계로 퍼지는지 연구하기 위해 유명 프랑스 작곡가(모리스 자르) 사망 직후 Wikipedia에 허위명언을 게시
 - Wikipedia는 게시 2분 만에 출처를 요구하고, 3번에 걸쳐 문구를 삭제하였으나, 이미 가디언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사에서 해당 문구를 보도에 인용하면서 실제 명언으로 둔갑하여 확산
 - 최초 게시자가 지어낸 명언임을 밝히면서 보도가 수정·삭제되었으나, 이후에도 해당 명언이 사실인 듯 확산되기도 하면서 인터넷에 한 번 게시된 허위정보는 빠르게 전파되며 꾸준히 재생산됨을 시사

* 자료 : NBC, Student hoaxes world's media on Wikipedia, 2009.5.12. / Wikipedia(en.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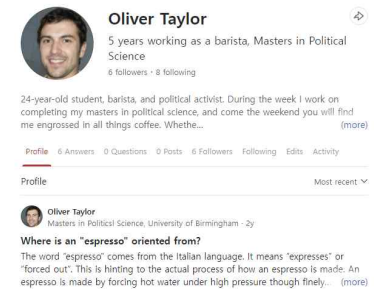
〈위키피디아에 게시된 거짓 명언〉



- (해외) Oliver Taylor라는 이름의 영국 대학생이 팔레스타인 인권운동가를 비판하는 사실을 블로그·언론 등에 기고하였으나 로이터의 취재를 통해 해당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프로필 사진 또한 딥페이크로 합성된 가상의 인물로 밝혀짐
 - 이스라엘 타임즈 등 해당 사실을 게재한 매체들이 사전에 거짓 여부를 판별하지 못해,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실제가 아닌 인물이나 사건을 만들어 여론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 자료 :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deep_fake) / Quora(quora.com)

〈딥페이크로 조작된 가상 인물〉



2 디지털 혐오표현

□ 디지털 혐오표현(Hate Speech)의 개념

- 혐오표현은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우나,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혐오표현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공통적으로 제시 - 즉, “디지털 수단을 통해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차별·폭력적인 내용을 담아 공격하거나 혹은 이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

〈국내외 주요기관의 혐오표현 정의〉

기관 명	내용
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 말, 글, 행동에 있어서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혈통, 성별 등에 기초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차별적 언어 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표현
유럽연합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 인종, 피부색, 혈통, 종교, 신념 또는 민족적 기원에 기초하여 정의된 집단 또는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폭력 또는 증오 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 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 자료 : United Nations, 2018 / European Union, 2008 / 국가인권위원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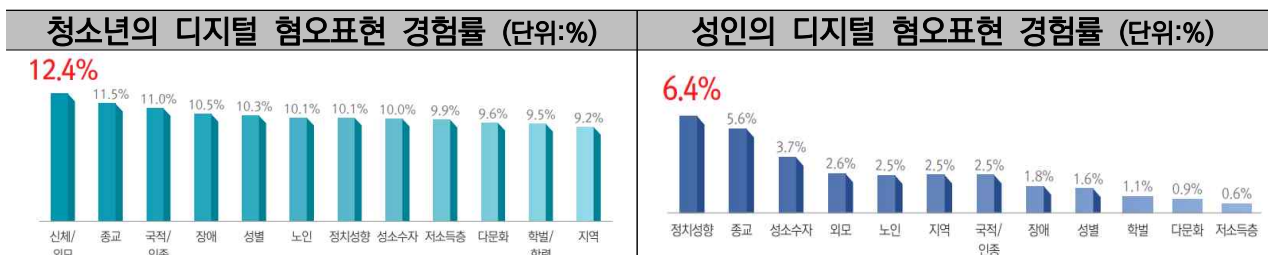
□ 디지털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

- 우리나라 국민의 62.0%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며, 주로 뉴스기사·댓글(71.0%), 개인방송(53.5%)에서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 -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개인방송(69.6%)에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나, 1인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 확산이 심각함을 시사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

- 한편 디지털 혐오표현의 가해 경험은 성인이 12.0%, 청소년의 경우 20.8%로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의 디지털 혐오표현 가해 경험은 정치, 종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반면 청소년은 다양한 집단·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두루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NIA,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22

□ 국내 대응 현황

◇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현행 법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기술적 조치를 병행

○ (정부규제) 단순히 디지털 혐오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하지 않으나, 명예훼손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 또는 편견을 유발하는 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정조치

〈차별비하 정보 심의 의결 현황 (단위:건)〉

위반내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별·비하	심의	3,022	1,356	2,638	1,886	1,580	1,369
	시정요구	2,455	1,166	2,352	1,406	473	308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

○ (자율규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결정, 인터넷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혐오표현을 자동 필터링하여 차단(블라인드 처리)하는 봇(bot)을 운영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 혐오표현 자율규제 현황〉

구분	내용
KISO	•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14.2월)
네이버	•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혐오 표현과 관련한 제한 규정 마련 • 혐오표현 등 악성 댓글 필터링을 위한 '시클린봇' 적용('19.4월)
카카오	• 증오발언에 대한 신고 항목 추가('20.12월) • AI 기술을 활용해 댓글 등 필터링하는 세이프봇 적용('20.12월) •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수립('21.1월)

* 자료 : KISO(kiso.or.kr), 카카오(kakaocorp.com), 네이버(naver.com)

○ (예방교육)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인권교육을 통해 대상(학생, 보호자 등)별로 혐오차별의 사례, 개념, 대응 등을 다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초중고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성,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혐오차별 예방 교안을 제작 및 보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윤리교육 커리큘럼에 일부 포함은 되어 있으나, '혐오표현'만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교육은 부재

□ 해외 대응 현황

◇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와 교육이 활성화

- (정부규제) 미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면책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혐오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
 -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범죄 및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형법 등의 법률을 통해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
 - (프랑스) 「언론과 자유에 관한 법」을 통하여 특정 속성을 이유로 개인·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규제
- (자율규제)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 (민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는 자체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추진
 - ※ 유튜브는 정책을 통해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등의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됨을 알리고 신고창구 마련
 - (유럽연합) '16.5월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한 EU 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혐오표현에 대해 사업자가 예방, 신고, 삭제, 차단 조치를 하도록 규율
 - ※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사업자 참여
- (예방교육) 주요국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중심이 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주요국 혐오표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국가	단체 명	주요 내용 및 특징
미국	Common S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세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 •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시민교육에서 “The Consequences of Online Hate Speech” 주제 교육
캐나다	MediaSm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의 대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비영리 단체 • 청소년 대상 온라인 편견, 고정관념, 혐오 대응 교육 ‘Facing online hate’ 제공
영국	Generation Glob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니 블레어 연구소 소속 글로벌 시민권 교육기관 • 2017년 인권에 근거하여 5개 주제로 제작된 수업모듈에 혐오 표현 관련 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과 인권(Hate speech & Human rights)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Hate speech & Freedom of speech)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2020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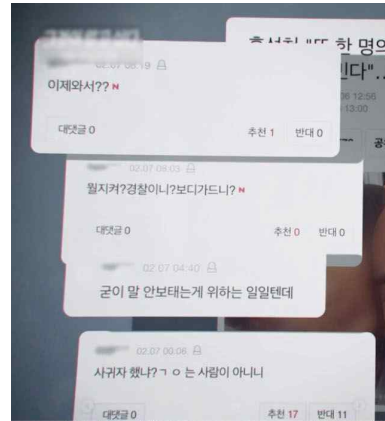
참고

디지털 혐오표현 국내외 사례

- (국내) 최근 소위 '사이버 렉카'를 중심으로 허위정보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산되면서, 공격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사이버 렉카'를 통해 한 번 공격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다수의 악플러로부터 지속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시달리는 등 혐오가 계속하여 확대·재생산
 - 많은 조회수로부터 얻는 수익을 위해 유튜버, 연예인, 일반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

* 자료 : SBS, [스브스夜] '그일' 혐오 조장하는 사이버 렉카, 극단적 선택하는 피해자 잇따라..., 2022.3.13.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 (해외)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 학살된 아우슈비츠를 본뜨거나,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및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KKK 등을 묘사하는 콘텐츠가 확산되었다가 플랫폼 운영사에 의해서 삭제
 -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가상현실 플랫폼(메타버스)에서 나치, 인종차별 등의 혐오 콘텐츠가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시사

* 자료 : The Sun, Roblox kids' game haven for Jihadi, Nazi and KKK roleplay..., 20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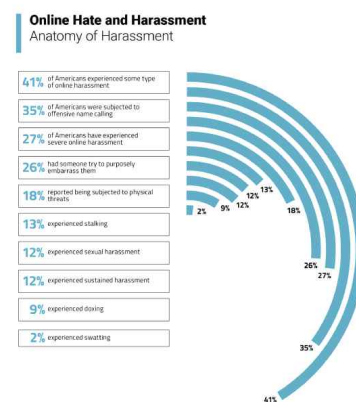
〈메타버스 내 나치 콘텐츠〉



- (해외) 미국의 대표적인 반혐오 단체인 ADL은 2020년 미국인의 41%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주로 페이스북(75%), 트위터·인스타그램(24%) 등 주요 SNS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
 - ADL은 디지털 혐오표현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 나타나는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ADL은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품위법*과 같은 기존 규제를 개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확대 등을 요구

* 미국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통해 불법콘텐츠 게시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

〈미국의 온라인괴롭힘 경험률〉



* 자료 : ADL, Online Hate and Harassment, 2021

3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Sexual Crime)의 개념

○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국가별로 '디지털 성범죄'를 통칭하여 사용하기보다 유형별로(비동의 유포, 불법채팅 등)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구분	설명
불법촬영	•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옹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유포·재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소자구입·저장·시청	•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
유통·소비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2

□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 기존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 중심에서, 최근에는 딥페이크 등 신기술과 결합한 합성·편집물, 강요에 의한 성착취물 등으로 다양화

- 합성물의 대상 또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주변 지인,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19년 약 9개월간 인터넷에서 발견한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동의 없이 합성된 포르노 영상으로 확인되어 딥페이크의 성범죄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임을 시사(Deeprtracelabs, '19.9)

○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9.3%, 성인의 14.9%가 지인능욕, 불법영상물유포, 몰카, 디지털성착취, 몸캠 등의 디지털 성범죄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NIA,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22

□ 국내 대응 현황

◇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 피해지원이 병행

○ (정부규제) 정부*는 온라인 상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

-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시 즉시 삭제·임시차단 등 조치하고 불법촬영물 방지를 위해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등 조치 의무

*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주요 내용〉

-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5개 법률 개정
-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로 대응하던 타겟형 대책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으로 범위 확대
- 성범죄물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강화 및 양형기준 마련 등으로 법정형 수준의 처벌 강화
- 인터넷 사업자가 즉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 학생, 학교밖 청소년, 군장병 등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

○ (제도개선) 법무부는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 이를 통해 메타버스(가상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격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등 총 11회차에 걸쳐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

- 국회는 법무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 및 결의안 채택을 추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22.4.15.)

※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박주민 의원, '22.4.20.) 등

○ (피해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방통위, 법제처, 지자체, 교육청(학교)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 콘텐츠 제공 및 교육 운영

-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디지털 클린)'을 통해 청소년 및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예방·대응법 제공

□ 해외 대응 현황

◇ 해외 주요국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피해자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 (정부규제) 최근 성적 영상의 비동의 유포(리벤지 포르노)와 섹스팅*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활발

* 섹스팅 :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 받는 것

국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중, 특히 아동 대상 범죄를 처벌하는 연방법 「아동성학대법」 시행 • 애리조나 등 30여개 주 정부는 섹스팅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 • 알래스카 등 27개 주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로 기소 • '04년 연방법 「영상 관음행위 방지법」 제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성범죄법」, 「2019년 관음행위처벌법」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는 관음행위(관찰·촬영 등)를 규제 • '15년 잉글랜드는 사적인 성적 영상의 비동의 유포의 처벌 규정 마련 • '16년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는 동의 없는 사적인 성적 영상의 공개와 함께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마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온라인안전증진법」을 통해 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 상에 당사자 동의 없이 게재하거나 게재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 • 형법의 개정을 통해 '이미지 기반 학대'(섹스팅, 리벤지 포르노 등) 가해자의 경우 최대 7년 징역에 달하는 법적 처벌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상에 성적인 이미지가 업로드 된 경우 게시자 혹은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삭제통지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민폐방지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촬영, 치한, 성희롱 발언 규제 • '14년 「사적인 성적영상물 피해방지법」을 제정하여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유포 규제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동향 vol.19, 2019 재구성

○ (피해지원 및 예방교육) 각 국가별로 피해 영상물 삭제, 법률 자문 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인권보호기구)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피해자 직접 지원서비스, 핫라인, 피해자 지원 캠페인, 피해 영상물 신고·삭제 가이드라인 제공 • (BADASS) 피해 사진 불법 업로드 알림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입법 활동 수행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된 성적인 영상물의 삭제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의 역할 수행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문관)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해 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예방, 디지털윤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운영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안전위원회) 섹스팅,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이미지 기반 학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창구의 운영, 불법 콘텐츠의 삭제,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폭력 이슈를 알리고 올바른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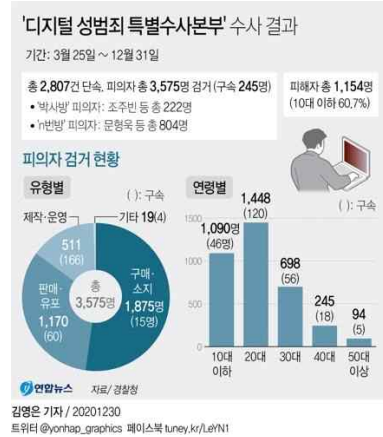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동향 vol.19, 201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디지털 성폭력 방지 위한 교육에 주력, 2020 / eSafety Commissioner, esafety.gov.au 재구성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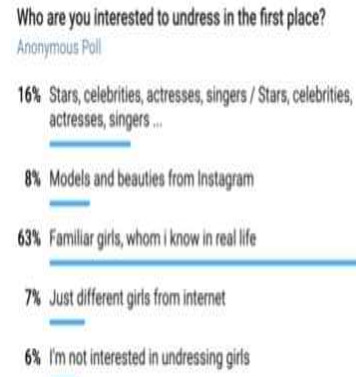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국내외 사례

- (국내) '19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유인·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거래·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발생
 -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많은 공분을 유발했으며, 범죄 수법의 진화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이를 계기로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약 9개월 간 수사한 결과 총 2,807건의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였으며 총 3,575명의 피해자를 검거

* 자료 : 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조주빈 등 3천575명 검거·245명 구속, 2020.12.30.



<딥페이크 합성사진 대상>



* 자료 : Sensity, Automating Image Abuse: Deepfake bots on Telegram, 2020

- (해외) 러시아에서 남성 3인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유기하는 모습을 유튜브 및 텔레그램을 통해 생중계하며 후원을 유도하고 후원금이 입금될 때마다 기물을 파손
 - 러시아 내에서 불법 행위를 생중계하는 Trash Streaming(TS)'이 성행하고 있으며 성폭행 외에도 폭행, 자해, 살인 등의 콘텐츠가 유통
 - 러시아 정부는 이를 금지·단속하고 있으나 지방 도시의 경제침체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TS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유튜브 집단 성폭행 생중계>



* 자료 : Dailymail, YouTube livestream where men were paid by viewers 'to rape a woman...', 2021.3.26.

Ⅲ 대응과제

□ 정부 주도의 정책에 한계, 민관협력 기반의 해결 노력 확대 필요

- 국내 디지털 역기능 대응은 정부 주도의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역기능 심화에 따라 더욱 강한 규제의 요구는 점점 커지는 추세
 - 그러나 정부 주도의 강제적 규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를 검열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
 -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제화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역기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산업이 위축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
 - ※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글로벌 서비스(구글, 페이스북 등)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내에 영업소 부재, 비협조성 등 국내 기업보다는 강제성 확보가 어려워 역차별 이슈가 발생
- 디지털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 기반의 자율 규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예컨대 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정부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바람직
 - ※ EU는 디지털 역기능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시 민간 사업자(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와의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음(EU : 큰 원칙 제시, 사업자 : 세부 방안 제시 및 실행)

□ 역기능 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

- 디지털 역기능은 점점 더 복잡하고 대량으로 발생하기에 인력 위주의 신고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역기능은 사람이 그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등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남
- 따라서 기술로 발생하는 역기능을 해결을 위한 대응 기술(딥페이크 진위 탐지기술, 혐오표현 자동필터링 기술 등)의 개발·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 정부는 민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한 서비스 개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기술개발을 지원
(예 : 과기정통부·NIA가 인공지능 학습용 변조영상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간(딥브레인AI)이 딥페이크 탐지서비스를 개발)

□ 범국가 차원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의 필요성

- 신고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 삭제 등과 같은 사후 대응 뿐만 아니라 역기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의 교육 추진 필요
 - 현재의 디지털 교육은 SW, 데이터 교육과 같이 디지털 활용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져 스스로 역기능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부족
 -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활용 교육만큼이나 예방적 측면 즉,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윤리, 정보판별 등) 교육이 활발
 - 디지털 시대에서 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와 함께 중장년층,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종합적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이 필요
 - ※ 우리나라 디지털 역기능 교육의 대부분은 청소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악성댓글, 사이버 불링, 정보유출 등 전통적 사이버폭력 교육내용에 편중

□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일 전담 대응 체계 필요

- 최근의 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단일 영역이 아닌 인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복합적인 성격을 지녀 단일 부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
 - n번방,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과 같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역기능의 경우 사후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대책을 마련 및 대응하고 있으나,
 - 디지털 역기능 전반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정책과 사업이 분산되어 있어 사전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한계
 - ※ 국내의 경우 역기능 종류에 따라 과기정통부, 방통위,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여가부 등 각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대응 중
- 디지털 역기능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할하고 분야별 유관 부처 및 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대상(아동 vs. 성인), 분야(성범죄 vs. 경제범죄) 등의 칸막이가 낮아져 시의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고, 협력 채널을 단일화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 호주는 온라인안전법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전반에 대응(규제, 피해지원, 교육, 민관협력 등)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

참고 호주 디지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운영 현황

□ 개요

- 호주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15년 「아동온라인안전증진법」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디지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를 설립
 - 초기 업무는 아동·청소년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17년 「온라인안전증진법」과 '21년 「온라인안전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모든 호주 국민 대상 디지털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권한이 강화
 - * '15년 '아동디지털안전위원회'로 출범하여, '17년 법 개정으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한 '디지털안전위원회'로 확대

□ 거버넌스

-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운영에 있어서 통신·도시기반·도시·예술부 산하 통신미디어청(ACMA)의 지원*을 받으나, 업무 지위에 있어서는 ACMA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 규제 기구
 - * ACMA는 위원회에 재무·회계·조달·계약·보안·시설·인적자원·통신·법률 서비스를 지원
 - (인력)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하며, 디지털안전위원회의 모든 직원은 ACMA 소속(위원장 및 일부 계약 직원 제외)으로 구성되나 ACMA의 지시를 받지 않음(법률적 명시)
 - (예산) 디지털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온라인 안전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ACMA에 의해서 관리되나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업무

- 디지털안전위원회는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을 위한 규제, 피해자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디지털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

구분	내용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비스에 불법 자료가 게시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게시자 혹은 사업자 등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통지 •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 등급 이상의 유해 콘텐츠가 게시되었을 때 사업자 등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통지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불링·불법콘텐츠 신고창구 운영, 피해 대응 가이드라인, 법률 지원 등 제공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청년, 여성, 고령자, 기업,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온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관련 자료·프레임워크·웹 세미나 수업 제공 • 학교에 온라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가 위원회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Trusted eSafety Provider'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업체 리스트를 제공 • 예비교사·교직원·사회복지사 등에게 온라인 안전 교육 역량 연수 제공
자문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위원회에 온라인 안전에 관한 청소년(13~24세)의 경험과 의견을 제공받는 온라인 안전 청소년 자문 위원회를 운영
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최신 정보와 글로벌 동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보고서 및 논문 발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관 등과 콘텐츠 공동 개발, 행사 지원, 교육자료 배포 등 협력 추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NGO)에 보조금 지급

*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Online Safety Act, 2021 / eSafety Commissioner, esafety.gov.au / ACMA·eSafety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20-21, 2021

참 / 고 / 자 / 료

해외 자료

- 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2018
- UNESCO,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2018
- EU, Framework Decision 2008/913/JAH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2008
- UK Parliament,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Fifth Report of Session 2017–19, 2018
- Australian Government, Online Safety Act, 2021
- ACMA·eSafety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20–21, 2021
- Media Literacy Now, U.S. Media Literacy Policy Report, 2021
- ADL, Online Hate and Harassment, 2021
- Deeptracelabs, The State of DeepFakes: Landscape, Threats, and Impact, 2019
- Sensity, Automating Image Abuse: Deepfake bots on Telegram, 2020

해외 웹사이트

- EU, 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online-disinformation
- eSafety Commissioner, esafety.gov.au
- YouTube, 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1939?hl=en
- YouTube, 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834785?hl=en
- Facebook, facebook.com/journalismproject
- Wikipedia, en.wikipedia.org/w/index.php?title=Maurice_Jarre&diff=prev&oldid=280649291
- Quora, www.quora.com/profile/Oliver-Taylor-163

해외 언론

- NBC, Student hoaxes world’s media on Wikipedia, 2009.5.12.
- The Sun, Roblox kids’ game haven for Jihadi, Nazi and KKK roleplay..., 2018.7.6.
- Dailymail, YouTube livestream where men were paid by viewers 'to rape a woman...', 2021.3.26.

국내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까, 2019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
-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안내, 2022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2020
- 방송통신위원회·NIA,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2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동향 vol.19, 2019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2
- 법무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2018
- 법무부,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처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권고, 2021
- 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 관찰 개선』 권고, 2021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 2022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 '디클' 접속하세요, 2022
- NIA,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 202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202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디지털 성폭력 방지 위한 교육에 주력, 202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보급, 2021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21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 2021
- 국회입법조사처,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2019
- 국회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2021
- 김민정,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2019
- 김민정,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2020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긴급토론회, 2022

국내 웹사이트

- KISO, report.kiso.or.kr
- KISO, www.kiso.or.kr/알림마당/주요-공개사항/정책결정/?mod=document&uid=847
- 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
- 팩트체크넷, facechecker.or.kr/deep_fake
- 아름다운디지털세상, ainse.kr
- 시청자미디어재단, checktalk.factchecker.or.kr
- 네이버, blog.naver.com/naver_diary/222237786119
- 카카오, www.kakaocorp.com/page/detail/9525
- 카카오, www.kakaocorp.com/page/detail/9611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94&ccfNo=1&cciNo=1&cnpClsNo=1>

국내 언론

- 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조주빈 등 3천575명 검거·245명 구속, 2020.12.30.
- 매일경제, KAIST, 딥페이크 탐지 모바일 앱 '카이캐치(KaiCatch)' 서비스 개시, 2021.3.30.
- 경향신문, 코로나 확산에 가짜뉴스도 범람, 2022.2.9.
- SBS, [스브스夜] '그일' 혐오 조장하는 사이버 렉카, 극단적 선택하는 피해자 잇따라···, 2022.3.13.
- 뉴시스,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국민이 이름 짓는다···24일까지 접수, 2022.5.9.